제22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0. 6.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88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 5. 29(금)

라. 회부일자 : 2020. 5. 29(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한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매입 및 신축 2건임.

[매입 및 신축 재산 총괄표]

(단위: m²)

연	≀lol⊞	スプ[] ア]	토 지		건 물		공작물	น) จ	
번	사업명	소재지	필지	면적	동	면적	건	비고	
1	생활SOC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 시설 조성 (매입 및 신축)	독산동 145-14	1	417	1	1,133		조성지 매입	
					1	1,934		금천구 가 족 센터 복합시설 신축	
2	시흥4동 장미공원 인근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매입 및 신축)	시흥동 3-11	1	208	1	246.78		조성지 매입	
					1	110		도시재생 기반시설 신축	
		시흥동 3-11 3-82					2	수직형EV 및 보도육교	

가. 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대상지 매입 및 조성 (여성가족과)

1) 목 적 :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 SOC 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가정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

2) 사업기간 : 2020. 3. ~ 2024. 1. 준공 및 개관

3) 취득대상

(단위:천원)

소 재 지	구분	공부면적 (m²)	취득면적 (㎡)	소유자	기준가격	추정가
시흥대로 475	건물	1,133	1,133	01 (71	260,229	4 500 000
(독산1동 145-14)	토지	417	417	이○기	2,493,660	4,500,000

4) 면 적 : 417㎡ (건물 1,133㎡)

5) 총 사업비 : 11,838,050천원

- 매입비 : 4,500,000천원

- 매입제반비용: 42,450천원

- 건축비 : 7,295,600천원

* 국비:1,857 시비:1,200 구비:8,781백만원

6) 주요시설: 가족센터, 글로벌통합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7) 조성 계획

-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 1,934㎡

(단 위 : 천원, m²)

소 재 지	건 립 규 모		층 별 주 요 시 설	비고
	지상7	238m²	글로벌통합센터, 언어교실	
	지상6	238m²	상담실1, 상담실2, 교육실4	
	지상5	238m²	사무실, 교육실 3	
시흥대로 475	지상4	238m²	교육실 1, 교육실 2	
(독산1동 45-14)	지상3	238m²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공간	
	지상2	238m²	공동육아나눔터	
	지상1	238m²	카페, 주민자율 공간	
	지하1	268m²	주차장, 기계실	

나. 시흥4동 장미공원 횡단 수직형EV 및 스카이워크 설치 (도시재생과)

1) 목 적 : 주민공모로 신청한 시흥4동 장미공원 인근 이동편의개선 사업계획(안)이 선정되어, 이동편의시설(공작물), 도시재 생기반시설(건축물) 및 시설 조성으로 교통약자 및 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제고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2) 사업기간 : 2020. 7. ~ 2021. 하반기

3) 매입대상 : 시흥동 3-11 (토지 208㎡, 건물 246.78㎡)

4) 총 사업비 : 2,361백만원 (전액 시비)

- 부동산 매입비 : 1,020백만원

- 공사비 등 사업비 : 1,341백만원

5) 조성 계획

- 신 축 : 건물 110㎡

- 공작물 : 수직형EV, 보도육교

4. 검토의견

가. 제안이유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이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이며, '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과 '시흥4동 장미공원 횡단 수직형EV 및 스카이워크 설치'로 총 2건으로 매입 및 신축 2건임.

나. 사업내용

1) 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가정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개요와 위치도는 표1과 표2 참고.

표1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145-14

○ 면 적 : 417 m²

○ 규 모 :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 1,934㎡

○ 주요시설 : 가족센터, 글로벌통합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11,838,050천원

- 국비:1,857 시비:1,200 구비:8,781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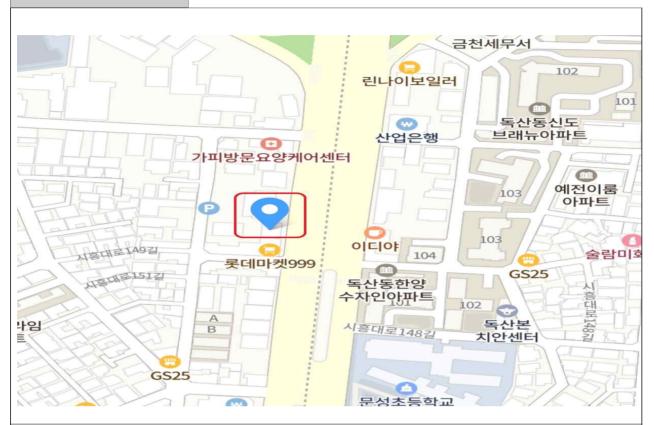
○ 일정 : 2020. 6월 공유재산심의 및 구의회 동의

2020. 7월 토지매입 체결

2021. 11. ~ 12월 건축공사 착공

2024. 1. 준공 및 개관

표2 위치도





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 위치도 및 전경 사진

2) 시흥4동 장미공원 횡단 수직형EV 및 스카이워크 설치는 급경사 구릉지내 단독, 다가구주택 등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시흥4동 3-82 일원 장미공원을 주민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여 대중교통 및 등산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개요와 위치도는 표3과 표4 참고.

표3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3-82, 3-11

○ 매입대상 : 시흥동 3-11 (토지 208㎡, 건물 246.78㎡)

○ 총 사업비 : 2.361백만워 (전액 시비)

○ 주요조성시설 : 건물 110㎡, 공작물 : 수직형EV, 보도육교

○ 소요예산 : 2,361백만원 (전액 시비)

- 부동산 매입비 : 1,020백만원

- 공사비 등 사업비 : 1,341백만원

○ 일정 : 2020. 7. ~ 2021. 하반기

표4 위치도

장미어린이공원 개요

• 개원일: '85.05.03.

면적: 1,207㎡ (옹벽구간 약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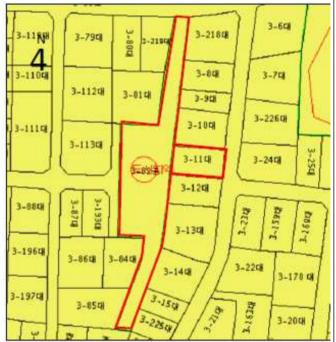
• 시설율: 30.6%

- 조합놀이대, 흔들놀이, 모래테이블

- 파고라1, 평의자9

- 색연필바람개비, 조명열주, 음수대 등





시흥동 3-11

제1종일반주거지역, 2층 단독주택(대지208㎡, '89년 사용승인)



부지여건 및 위치도

다. 검토결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과 '시흥4동 장미공원 횡단 수직형 EV 및 스카이워크 설치'매입 및 신축 2건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SOC 가족센터 복합시설 조성하여 가정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급경사 구릉지 내 단독, 다가구주택 등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시흥4동 3-82 일원장미공원을 주민 및 교통약지 이동편의를 증진하여 대중교통 및 등산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붙임 관련 법령 1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 · 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 · 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차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15. 1.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0. 1. 3] [대통령령 제29939호, 2019. 7. 2, 일부개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 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1. 사업목적 및 용도
- 2. 사업기간
- 3. 소요예산
- 4. 사업규모
- 5. 기준가격 명세
- 6. 계약방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 2. 「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 8.「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 11. 19., 2015. 7. 20., 2017. 7. 26.>
-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 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 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 가표준액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19. 5. 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14호, 2019. 5. 9., 일부개정]

-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31.. 2015.10.8.>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 다. <개정 2013.12.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2.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 등을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ㆍ금액 등은 제30조의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제30조의2의 이행강제금의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제34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의 처리실적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 2. 6., 2009. 4. 22., 2013. 3. 23., 2014. 1. 7., 2018. 3. 2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09. 2. 6.]